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공고 제2026-002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요강

- 뮤지컬분야 -



2026. 02.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02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 02-940-2994, ✉ arts@skuniv.ac.kr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요강(요약)

1. 모집분야 및 모집정원

선발 분야	선발 대상	모집 정원	운영기관	지원 가능 대상
뮤지컬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60 명	서경대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3~고2 학생 또는 동연령 서울시 거주 청소년

2. 선발일정 및 방법

<table>
<tr><th>단계</th><th>주관</th><th>일정</th><th>세부내용</th></tr>
<tr><td>원서제출</td><td>소속학교</td><td>원서접수기간
2026.3.30.(월)
~4.17.(금)</td><td>① 모집기간 : 2026.3.30.(월)~4.17.(금) 오후 3시
* 정원모집미달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추후 홈페이지 공지

② 접수방법 :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모집안내(https://aec.skuniv.ac.kr/6568)'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원서를 작성하여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제출 접수
(제출링크주소 https://forms.gle/hQBUaopaNf98mSJy8)
* 접수 마감일 링크 자동 차단 (반드시 해당서식 사용)
* 서경대학교 뮤지컬 영재교육원 원서접수의 경우 GED 해당 없음

③ 전형료 납부 : 50,000원 계좌입금 (예금주: 서경대학교, 신한은행 100-023-690939)
* 반드시 입금자명 지원자 이름으로 기재 (예시: 한국고홍길동-6자이내)
* 사회통합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응시자는 전형료 면제

④ 전형료 환불 : 4.17.(금) 오후 5시까지 지원취소 신청서 제출자에게 전형료 전액 환불 *2주 이상 소요
* 4.17.(금) 오후 5시 이후의 취소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td></tr>
<tr><td>실기 및 면접평가</td><td>서경대학교</td><td>고사일정
2026.4.25.(토)
13:00~예정</td><td>① 실기 및 면접평가
- 일시 : 2026.4.25.(토) 13:00~(예정)
* 지원자는 20분 전까지 수험생 대기실 입실 완료, 미 입실시 응시자격 박탈
* 상세일정은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 장소 : 수험생 대기실 은주관 504호 (실기 및 면접평가 장소 서경대학교 606호 스튜디오3)
- 대상자 : 지원서 접수한 학생 모두 해당
- 실기 및 면접평가 내용(공통, 전공, 특기 총 3영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통영역</td><td>- 참여동기 및 지속의지 등 인성 및 전공 적합도 면접
*장르의 특성상 잦은 결석은 퇴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전공영역</td><td>- 자유곡 1곡 / MR / 1분 30초 이내
*자유곡 : 뮤지컬 작품 중 넘버 선정
*필요한 경우 추가곡 또는 전공기초 영역 질의 있을 수 있음</td></tr>
<tr><td>특기영역</td><td>- 연기 또는 춤 / 1분 30초 이내</td></tr>
</table>
*MR은 MP3파일로, 반주 필요 위치(분,초)부터 시작하도록 편집하여 원서제출시 함께 파일제출 함
*MR파일이 없거나 열리지 않을 경우 또는 본인신청곡과 MR이 맞지 않을 경우 등 파일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반주로 응시해야 함
②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제출서류일체(원본)</td></tr>
<tr><td>합격자발표</td><td>서경대학교</td><td>합격자발표
2026.4.28.(화)
18:00 예정</td><td>① 선정심사위원회 : 전형 자료를 토대로 최종합격자 심의 및 선정

② 선정 기준 : 실기평가(80점), 면접 평가(20점)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실기 및 면접평가에 결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 결시자 전형료 환불 불가
※ 사회통합대상자 우선 선발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
(합격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 비율 미적용)
※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별도 통보)
※ 동점자 처리는 영재교육원 내부 기준에 따름

③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4.28(화) 18:00(예정)
* 소속 중고등학교 공문 팩스발송 및 학생 개인 문자 발송</td></tr>
</table>

<table>
<tr><th>단계</th><th>주관</th><th>일정</th><th>세부내용</th></tr>
<tr><td>등록 및 개강</td><td>서경대학교</td><td>등록일정
2026.4.29.(수)
~5.6.(수)

개강일정(예정)
2026.5.9.(토)</td><td>① 등록 및 개강일정
- 등록일정 : 2026.4.29.(수)~5.6.(수) 오후 3시까지 수익자 부담금 납부
- 개강일시 : 2026.5.09.(토)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0:00~ (예정)
- 입학식장소 : 서경대학교 유담관 코워킹스페이스1 (예정)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요사항 개별 안내 예정
*환불규정참고
<table><tr><th>반환사유 발생,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th><th>반환금액(월 기준)</th></tr><tr><td>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d>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tr><td>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등은 제외</td></tr><tr><td>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등은 제외</td></tr><tr><td>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td><td>환불하지 아니함</td></tr></table>
② 학생 준비물
- 필기구, 노트 등

③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연령 청소년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자격 및 입학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서울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연령 청소년만 지원·재원·수료 가능

③ 수익자 부담금 년 900,000원 1회납</td></tr>
</table>

3.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형 방법	일반전형대상자	사회통합대상자
제출 서류	가. [서식1] 지원서 나. [서식2] 자기소개서 다. [서식3] 학교장확인서 서울거주 동 연령 청소년의 경우 [서식3-1]보호자확인서 제출 라.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한글 또는 PDF로 제출, 직인 및 서명 필수 *고사 당일 전체 서류 원본 제출 필수	1. 일반전형대상자 제출서류 '가~라' 동일 2. 사회통합대상자 추가제출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증빙서류전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 증빙서류 일체) *하단 사회통합전형계획 내 Ⅵ.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 서류 참조 *고사 당일 전체 서류 원본 제출 필수

4. 지원자 유의사항

(1)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영재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접수 후 분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 원서 및 서류 접수는 공고된 시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기한 내 지원서 및 서류 접수 또는 전형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응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5시 이후의 취소자 및 고사 불참자, 결격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6) 휴대전화·카메라·타블렛PC 등 통신 가능 기기 및 전형 과정에 불필요한 물품 일체 고사장 반입 불가합니다.

(7) 선발기간 중 합격자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및 해당 소속 학교에 공고하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은 본 영재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최종 합격자가 해당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10) 영재교육기관에 이중 등록한 경우 모든 영재교육원에서 입학 자격이 상실됩니다.

(1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영재교육원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13) **4.17.(금) 17:00 이후부터 면접을 취소, 또는 불참시 전형료는 환불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요강

모집요강 공고 : 2026. 2.

1. 모집분야 및 모집정원

선발 분야	선발 대상	모집 정원	운영기관	지원 가능 대상
뮤지컬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60 명	서경대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3~고2 학생 또는 동연령 서울시 거주 청소년
유의사항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영재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가. 2026년 현재 선발 대상 예정 학년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뮤지컬 분야에서 재능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으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서울시에 거주 중인 동연령 청소년

다. '가.'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 및 '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자격 및 입학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3. 지원 시 유의 사항

가. 중복지원 불가

① 모든 지원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 한 곳에만 응시할 수 있음

② 이미 선발을 실시한 2026학년도 타 영재교육기관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 불가

※ 영재교육기관 : (대학부설,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의)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나. 사회통합대상자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소속 학교에서 확인 후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으로 관련 서류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링크제출시 첨부(실기 및 면접고사 시 현장 원본서류 제출필수, 지원접수방법 모집안내 글 참고 https://aec.skuniv.ac.kr/6568)

※ 첨부된 **「사회통합전형」계획** 참조

다. 전학자 처리 : 지원서 제출 후 타 학교로 전학한 경우 서경대학교 영재교육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전화번호: 02-940-2994, 메일 arts@skuniv.ac.kr)

라. 지원자 유의사항

(1)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영재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접수 후 분야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 원서 및 서류 접수는 공고된 시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기한 내 지원서 및 서류 접수 또는 전형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응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5시 이후의 취소자 및 고사 불참자, 결격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 하지 않습니다.

(5)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6) 휴대전화·카메라·타블렛PC 등 통신 가능 기기 및 전형 과정에 불필요한 물품 일체 고사장 반입 불가합니다.

(7) 선발기간 중 합격자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및 해당 소속 학교에 공고하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은 본 영재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최종 합격자가 해당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10) 영재교육기관에 이중 등록 한 경우 모든 영재교육원에서 입학 자격이 상실됩니다.

(1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영재교육원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13) **4.17.(금) 17:00 이후부터 면접을 취소, 또는 불참시 전형료는 환불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전형 단계 및 선발 방법

가. 전형 단계(일반전형)

<table>
<tr><th>단계</th><th>주관</th><th>일정</th><th>세부내용</th></tr>
<tr><td>원서제출</td><td>소속학교</td><td>원서접수기간
2026.3.30.(월)
~4.17.(금)</td><td>① 모집기간 : 2026.3.30.(월)~4.17.(금) 오후 3시
* 정원모집미달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추후 홈페이지 공지
② 접수방법 :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모집안내(https://aec.skuniv.ac.kr/6568)'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원서를 작성하여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제출 접수
(제출링크 주소 https://forms.gle/hQBUaopaNf98mSJy8)
* 접수 마감일 링크 자동 차단 (반드시 해당 링크를 통해 제출)
* 서경대학교 뮤지컬 영재교육원 원서접수의 경우 GED 해당 없음
③ 전형료 납부 : 50,000원 계좌입금 (예금주: 서경대학교, 신한은행 100-023-690939)
* 반드시 입금자명 지원자 이름으로 기재 (예시: 한국고홍길동-6자 이내)
* 사회통합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응시자는 전형료 면제
④ 전형료 환불 : 4.17.(금) 오후 5시까지 지원취소 신청서 제출자에게 전형료 전액 환불 *2주 이상 소요
* 4.17.(금) 오후 5시 이후의 취소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td></tr>
<tr><td>실기 및 면접평가</td><td>서경대학교</td><td>고사일정
2026.4.25.(토)
13:00~예정</td><td>① 실기 및 면접평가
- 일시 : 2026.4.25.(토) 13:00~(예정)
* 지원자는 20분 전까지 수험생 대기실 입실 완료, 미 입실시 응시자격 박탈
* 상세일정은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 장소 : 수험생 대기실 은주관 504호 (실기 및 면접평가 장소 서경대학교 606호 스튜디오3)
- 대상자 : 지원서 접수한 학생 모두 해당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공통영역</td><td>- 참여동기 및 지속의지 등 인성 및 전공 적합도 면접
*장르의 특성상 잦은 결석은 퇴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td></tr><tr><td>전공영역</td><td>- 자유곡 1곡 / MR / 1분 30초 이내
*자유곡 : 뮤지컬 작품 중 넘버 선정
*필요한 경우 추가곡 또는 전공기초 영역 질의 있을 수 있음</td></tr><tr><td>특기영역</td><td>- 연기 또는 춤 / 1분 30초 이내</td></tr></table>*MR은 MP3파일로, 반주 필요 위치(분,초)부터 시작하도록 편집하여 원서제출시 함께 파일제출 함
*MR파일이 없거나 열리지 않을 경우 또는 본인신청곡과 MR이 맞지 않을 경우 등 파일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반주로 응시해야 함
- 실기 및 면접평가 내용(공통, 전공, 특기 총 3영역)
②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제출서류일체(원본)</td></tr>
<tr><td>합격자발표</td><td>서경대학교</td><td>합격자발표
2026.4.28.(화)
18:00 예정</td><td>① 선정심사위원회 : 전형 자료를 토대로 최종합격자 심의 및 선정
② 선정 기준 : 실기평가(80점), 면접 평가(20점)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실기 및 면접평가에 결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 결시자 전형료 환불 불가
※ 사회통합대상자 우선 선발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
(합격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 비율 미적용)
※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별도 통보)
※ 동점자 처리는 영재교육원 내부 기준에 따름
③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4.28(화) 18:00(예정)
* 소속 중고등학교 공문 팩스발송 및 학생 개인 문자 발송</td></tr>
<tr><td>등록 및 개강</td><td>서경대학교</td><td>등록일정
2026.4.29.(수)
~5.6.(수)

개강일정(예정)
2026.5.9.(토)</td><td>① 등록 및 개강일정
- 등록일정 : 2026.4.29.(수)~5.6.(수) 오후 3시까지 수익자 부담금 납부
- 개강일시 : 2026.5.09.(토)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0:00~ (예정)
- 입학식장소 : 서경대학교 유담관 코워킹스페이스1 (예정)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요사항 개별 안내 예정
*환불규정참고
<table><tr><th>반환사유 발생,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th><th>반환금액(월 기준)</th></tr><tr><td>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d>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tr><td>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등은 제외</td></tr><tr><td>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등은 제외</td></tr><tr><td>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td><td>환불하지 아니함</td></tr></table>② 학생 준비물
- 필기구, 노트 등
③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연령 청소년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자격 및 입학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서울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 연령 청소년만 지원·재원·수료 가능
③ 수익자 부담금 년 900,000원 1회납</td></tr>
</table>

나. 사회통합대상자 우선 선발(첨부된 사회통합 전형 계획 참조)

1)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사회통합대상자로 추천된 지원자의 경우 각 분야별 선발 인원의 20%까지 정원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음

2) 사회통합대상자의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 영재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선발 방침 및 선정 비율과 상관없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장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3)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기준

전형	순위	유형	영재교육 교육비 지원 여부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이내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지원함 (일부 수익자부담)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1]	
사회다양성전형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하지 않음 (전액 수익자부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4)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제출서류 : 일반전형대상자 제출서류 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 전체(하단 첨부된 사회통합전형계획 참조)

※ 사회통합대상자 지원자로 지원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단순 오류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 가능)

다. 영재교육기관별 중복지원(추천) 및 중복등록 유의사항

1) 중복지원 규정

: 예술분야 단위학교 영재교육원에는 1곳만 지원가능하며, 이미 선발완료된 2026학년도 타 영재교육기관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 불가함

1)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 영재교육기관이란 대학부설,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의미함

2) 중복지원 관련 유의사항

① 2026학년도 영재교육기관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불가

② 합격 이후에도 중복지원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취소함

③ 단위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은 추후 타 영재교육기관에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또는 중복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라. 지원자 유의사항

1) 수험생은 평가 시작 20분 전에 대기실 입실을 완료해야 함

2) 평가 당일 지원자 제출서류 원본, 학생증(신분증) 및 필기도구 등 그 외에 필요한 준비물은 별도 문자안내 할 예정

마.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형 방법	일반전형대상자	사회통합대상자
제출 서류	가. [서식1] 지원서 나. [서식2] 자기소개서 다. [서식3] 학교장확인서 서울거주 동 연령 청소년의 경우 [서식3-1]보호자확인서 제출 라.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한글 또는 PDF로 제출, 직인 및 서명 필수 *고사 당일 전체 서류 원본 제출 필수	1. 일반전형대상자 제출서류 '가~라' 동일 2. 사회통합대상자 추가제출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증빙서류전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 증빙서류 일체) *하단 첨부된 사회통합전형계획 참조 *고사 당일 전체 서류 원본 제출 필수

5. 선발 전형료

가. 방법 : 계좌입금(서경대학교, 신한은행 100-023-690939)

※반드시 입금자명 기재(예시: 한국고홍길동-6자이내)

나. 모집기간 : 2026.3.30.(월)~4.17.(금) 오후 3시

* 정원모집미달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다. 전형료 : 50,000원(금오만원)

라. 반환규정 : 접수 마감일인 4월 17일(금) 오후 5시 전까지 지원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응시료 반환(4.17.(금) 오후 5시 이후의 취소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마. 사회통합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응시자는 전형료 면제

6. 일반 유의사항

가. 학교에서는 영재교육 희망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여 희망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지도

나. 영재교육원 지원 자격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결격 처리하고, 사후에라도 결격사항이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지원 규정(중복지원 등)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 또는 합격 후 타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로 입학 및 전출하는 경우 제적 처리됨

마. 지원서 제출 시 기한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유의
(미발송으로 인해 제출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7. 선발관련 문의 사항

가. 기타 선발관련 문의사항

-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담당자 ☏ 02-940-2994
-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모집안내**(https://aec.skuniv.ac.kr/6568)'

나.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안내 사이트 : 서울영재교육(https://ssp.sen.go.kr/sge/)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사회통합전형 우선 선발: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함

단, 사회통합대상자의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 영재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선발 방침 및 선정 비율과 상관없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장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사회통합전형 유형 및 기준

전형	순위	유형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이내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2]
사회다양성전형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제출처: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 직접 제출(제출방법: 서경대학교 뮤지컬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참고)

2)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Ⅰ 관계 법령 및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12조 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법 안내(중등교육과-4116, 2025. 3. 7.)

○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계획 안내(중등교육과-16653, 2025. 5. 12.)

Ⅱ 기본 방침

○ 영재교육기관은 **모집정원의 20%이내**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우선 선발

○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하며, 사회통합전형의 6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선발하고,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충원

○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 선발

○ 합격이 결정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 대한 합격 취소

Ⅲ 개요

전형 유형

전형	유형
기회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사회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3],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

전형 방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단계	선발
1단계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선발
3단계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단계별 전형 시 기준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u>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u>**

▶ 사회다양성 전형 중 **<u>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u>**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합격 확인 시 엄정 조치

○ 영재교육원: 증빙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내용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3)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Ⅳ 유형 및 지원자격

유형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균등전형	60%이상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유의) 근거 조항 제60조의5로 입법 개정 예정 **[시행 2025. 9. 19.]**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회다양성전형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자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60%이상 우선선발) 관련 세부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9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참고**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9~10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참고**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 **9~10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참고**

* **교육비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속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서식3] 확인서 제출 가능

*사회통합대상자의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 영재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선발 방침 및 선정 비율과 상관없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장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4)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범위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자(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학생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5~6쪽의 [예시1, 예시2] 양식 참조

예시)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확인대상자로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1.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할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4. 할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9~10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참고**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예시1)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확인대상자'**란에 지원학생 **본인 또는 부모**이면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3. 6. 5.>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독립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훈격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확 인 대상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보훈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예시2)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확인대상자'**란에 지원학생 **본인 또는 부모**이면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5서식] <개정 2023. 6. 5.>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훈격 또는 상이등급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확 인 대상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보훈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필수요건

2025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2025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62,782	225,915	229,454	880,320
3인	243,019	288,617	295,134	1,299,840
4인	320,449	354,964	369,517	1,711,680
5인	382,076	407,092	431,294	2,099,760
6인	447,279	461,699	506,004	2,466,960
7인	545,970	552,230	599,810	2,821,680
8인	591,277	599,810	673,463	3,176,400
9인	654,281	673,463	792,926	3,531,120
10인	654,281	673,463	792,926	3,885,600

*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유의사항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금액 합산액 및 2025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유의사항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

- (개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의미
 ※ 단, 직장 및 혼합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제외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 납부청구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 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유의사항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관련 ➜ 11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와 19쪽 '참고4' 참고

-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 (개념) **재산세(주택)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사례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Ⅴ 지원 절차

부정합격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사회통합전형 지원

○ 지원 절차별 상세 내용

지원자	내용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서식1-4] 지원신청서(출력물) (학생 및 보호자는 전형 유형, 지원 자격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식5] 학교장 추천서(해당자만)[5]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증빙)서류

○ 사회통합전형 지원 서류는 지원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해당 영재교육원으로 제출

5)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학교장 추천서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

▣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및 역할

- **(구성)** 교감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교감, 위원 중 1명이 실무 총괄)
- **(심의 요건)** 기회균등전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

- **(학교장 추천서 발급)** 학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서 **[서식5]** 발급

Ⅵ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 서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자녀(지원자)' 기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 바로가기
	③ [서식1-4]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④ [서식5]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해당자만)	지원자 및 학교 작성	○ [서식1-4], [서식5] 해당자

□ 기회균등전형(공통서류①~④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기 회 균 등 전 형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원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① 수급자 증명서 ☞ 바로가기 ②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 바로가기
2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누리집)	○ 복지로(누리집) ☞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 회 균 등 전 형					
	그 자 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서식)(p18. 참고 5.)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복지로(누리집)	○ 정부24(누리집) ☞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 복지로(누리집) ☞ 바로가기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학교,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 학교 [붙임목차 서식6]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 정부24 ☞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5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 정부24 ☞ 바로가기
6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지원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학교	○ 학교: 학교 행정실에 교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발급** 요청**(※학교장 직인 날인)**
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추천위원회(p8. 구성 요건 및 역할) 심의 후 학교장 확인서[서식5] 발급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필수**
			○ **[서식5]**학교장 확인서의 추천사유란 작성	학교	

□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서류 ①~④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증빙서류⑤~⑥또는⑤~⑦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제출 서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①~⑥ 직장건강보험및혼합 (지역+직장)가입자 ①~⑦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직장건강보험 및 혼합 (지역+직장) 가입자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⑦-1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제출 ⑦-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 된 경우: 17~19쪽의 참고3-1, 3-2, 3-3, 참고4 확인 후 서류 각 1부씩 총 3부 제출	주민센터,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 참고3-1(17쪽), 참고3-2(18쪽), 참고3-3(19쪽), 참고4(19쪽) ※ 지방세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 해당 페이지 확인하여 서류 제출 ★ 서울이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 (예시 서류 지참 시 서류 발급 용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 하여 서류 발급 시 17~19쪽 참고 서식 지참 추천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 원 유 형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1순위	1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 사본	해당서류 발급기관	
	2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3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사 회 다 양 성 전 형(※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4	소년 · 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6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2 순 위	1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2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3	군인 자녀 (중령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이하)			
	5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이하)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됨

참 고 목 차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 14

참고 2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양식) ····· 16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 17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 18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 19

참고 4 복지로 사이트 서류 발급 방법 ····· 20

참고 5 복지로 사이트 서류 발급 방법 ····· 20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 21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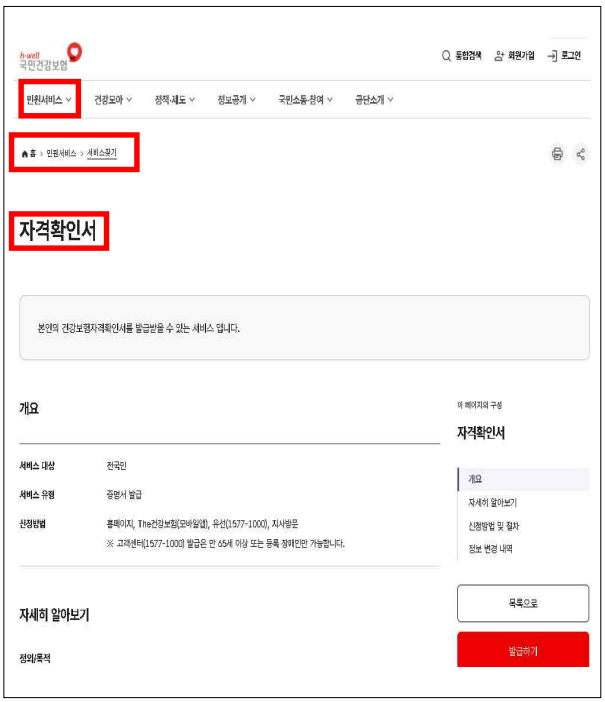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Q&A'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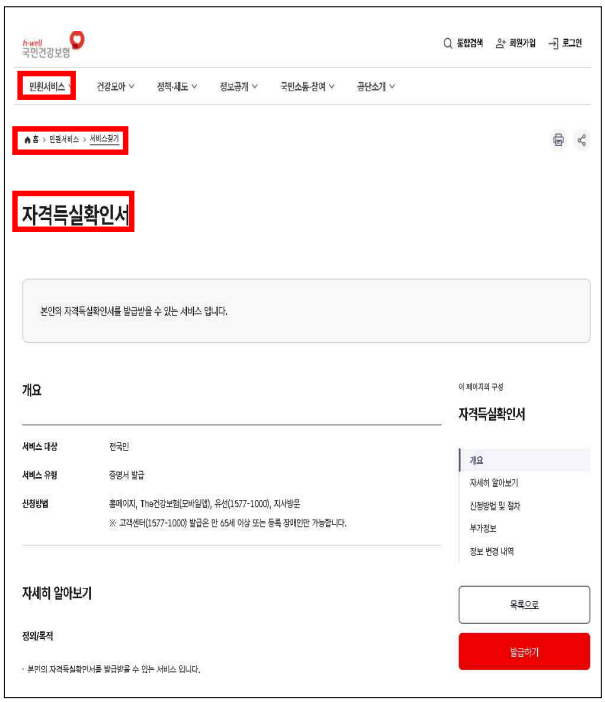
④ 제출 자료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위한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바로가기, 자격득실확인서☞ 바로가기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양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①	납부자번호	⑤

2025년 01월~2025년 12월 납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액 (요양)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액 (요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②		④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정산	③		③					
합계								

납부총액		용도구분	납부확인용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① 사업장 명칭: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 지역가입자: 사업자 명칭 없음)**

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금액 산출**

* 합계금액: 고지금액 합계시, 고지되지 않은 달도 최근 6개월에 포함됨

예) 6개월 중 3개월만 고지금액이 있는 경우: 3개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 6개월

③ **연말정산**: 전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감분(**※ 산정에서 제외**)

※ **연말정산 금액을 5~10회 분할 납부한 경우:** 재직하는 사업장의 업무담당자 신청으로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하여 발급 가능**(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여야만 발급 가능) - 유선 발급 시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④ 소득월액(건강):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번호 확인. 납부번호가 동일하면 중복하지 않고 세대주 금액으로만 산정

※ 참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자격득실확인서'로 피부양자임을** 확인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재산세 주택 ①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재산세 주택 ②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발 신 명 의(직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재산세 주택①, ② 금액 합산 (기타 과세 내역제외)

※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지방세 부과된 지역(참고3-1)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참고 3-2, 3-3) 각각 발급하여야 함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예: 서울 내 과세된 자치구 외 나머지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Page : 1/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예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발급(서울시)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서울 중랑구 **※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자치구 외 서울 내 모든 자치구 표기**

[과세연도: 2024~2025]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 (Busines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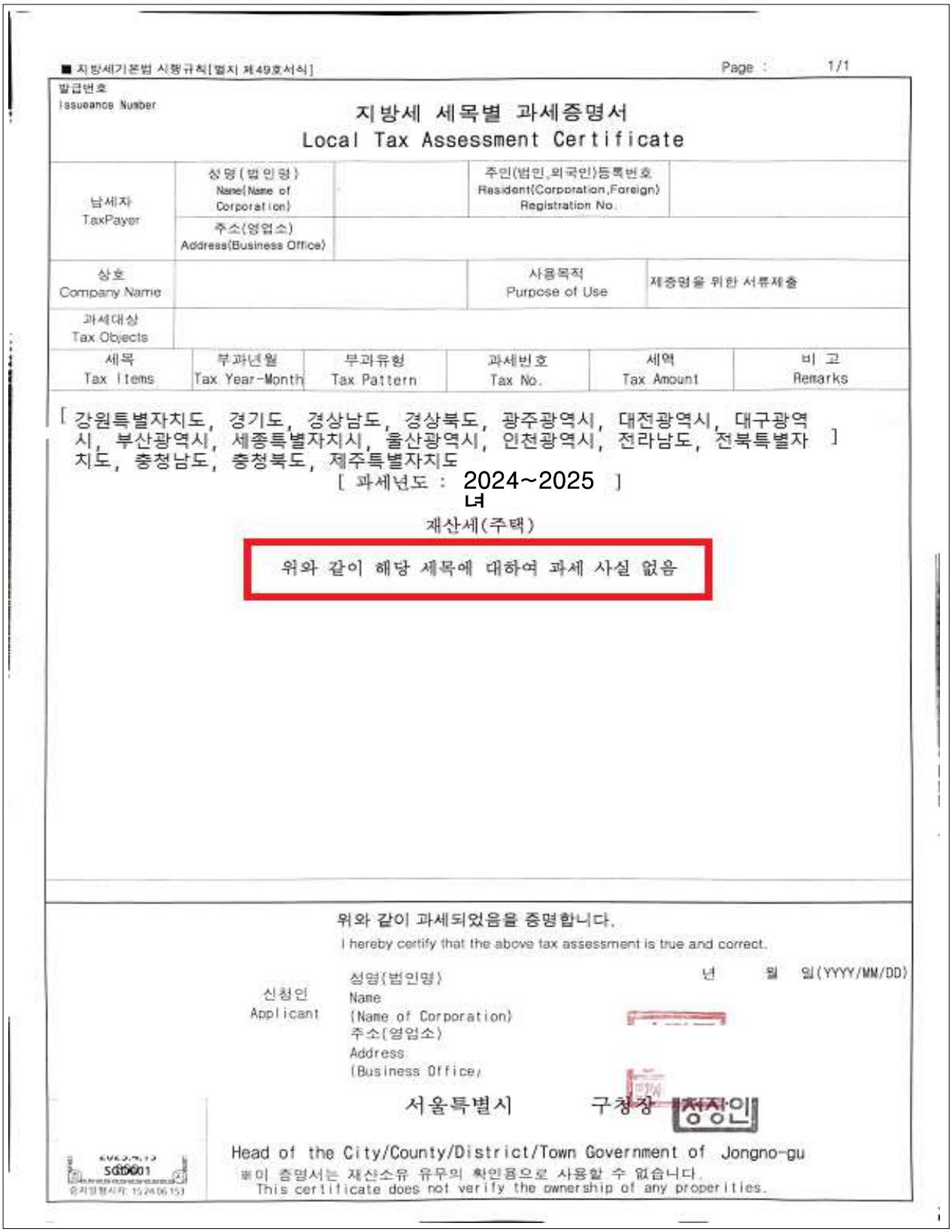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ities.

★ 참고 3-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과세된 서울 내 자치구 외 모든 자치구에 대한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을 증빙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까지 3-1~3-3 각 1부씩 총 3부 제출 필수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예: 서울 외 16개 시도 지역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Page : 1/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세년도 : 2024~2025 년]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 (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생략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SD0001

※ 참고3-1, 3-2, 3-3 서류를 종합하여 '과세된 지역' 및 '과세되지 않은 지역'을 합쳐 17개 시·도가 모두 있어야 함

참고 4 사회다양성전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구분	발급 서류
주택 미소유 (제출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1부** :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세(주택)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주택 소유하여 재산세 과세된 경우 (제출서류: 각 1부씩 총 3부) 사례: 서울 A자치구에 주택 소유	**참고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된 지방세(주택)양식 1부** : 서울시 내 재산세(주택) 기준으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예시: 서울 A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내역이 포함된 서류** **참고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서울] 1부** : **(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예시: A구 이외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참고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전국] 1부** : **(무관할, 전국단위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16개 시·도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증빙예시: 서울시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16개 시도)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 서울이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 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발급처(공통)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참고 5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